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8
----------	------

제출연월일: 2025. 6. 3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영장례의 지원 범위를 늘리고 최근 고독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나. 상위법 명시 및 지원 내용 추가(안 제1조, 제3조 ~ 제7조)

- 위임 근거가 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명시
- 지원 내용에 '유품정리' 추가

다. 저소득층 정의 범위 확대 및 유품정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저소득층 범위에 '긴급지원대상자' 추가

라.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 중구 거주자 → 중구 거주자이거나 중구에서 사망한 사람

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안 제6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 지원신청 대상자 추가
: 연고자, 이웃사람 →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 수행자
- 지원신청에 따른 비용 청구서 제출 및 비용 지급기한 신설
: 지원신청에 따른 비용 청구 시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
- 지원신청 관련 별지 서식 정비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설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의2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24183호, 2025. 6. 10.)
- 라. 입법예고: 2025. 6. 2. ~ 6. 23.(21일간)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독신세대”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신세대”로, “장례지원”을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중 “공영장례 지원 등”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영장례”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로,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를 “구청장은”으로, “거주한 사람으로”를 “거주하거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으로, “해당하여야 한다”를 “해당하는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영장례 지원”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공영장례”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한”을 “따른”으로,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제1항 중 “공영장례 지원을”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로, “연고자·이웃사람”을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 수행자”로,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영장례”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신청인은 장례 및 유품정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 제1항 중 “공영장례”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공영장례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영장례 지원 등에 소요된”을 “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28 (제275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중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상 호(명 칭)	(연락처: ☎)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공영장례 <input type="checkbox"/> 유품정리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장례 추진 결 과	공 영 장 례 (유 품 정 리)	○ 공영장례(유품정리) 일자: ○ 장 소:			
	장 례 수 행 자 (수 행 업 체)	○ 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집행액 (원)	계	장례비용	그 밖의 비용	
청구금액	금 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p>「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p> <p><신 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 등에 필요</u></p>	<p><u>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장사 등에 관한 법률</u>」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독신세대-----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u>.</p> <p>제2조(정의)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p> <p>4.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u>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u></p>

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

----- 노력해야 -----.

② -----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

----- 거주하거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 해당하는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제5조(지원방법) ① -----

-----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
-----.

③ ----- 다른 -----
----- 따로 정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

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받으려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신설>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장례 및 유품정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
-----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수행자 ----- 별지 제1호서식----- 제출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
-----.

⑤ 신청인은 장례 및 유품정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
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
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
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
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
과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
례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업무-----

-----.

제8조(지도·감독) ① -----

----- 지원-----

-----.

② -----

----- 그 -----

-----.

<삭 제>

(뒷면)

공영장레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중구는 공영장레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레 지원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레 지원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레 지원	3년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뒷면)

공영장래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중구는 공영장래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공영장래 지원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래 지원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래 지원	3년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2024. 2. 6.>

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2024. 2. 6.>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2024. 2. 6.>

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2024. 2. 6.> [제목개정 2015. 1. 28.]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예산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복지지원과
- 직 급: 지방행정서기
- 이 름: 김지인
- 연락처: (052)290-3556